

# 공시송달 공고

건축법 제79조(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) 및 제80조(이행강제금)에 따라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「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」, 「2차 시정명령」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및 유치기간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- 공 고 명 :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및 2차 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- 공고기간 : 2026. 8. 7. ~ 8. 25.(18일간)
-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- 관련근거 :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- 공고대상자(송달내용)

○ 1차 시정명령

| 납부자 | (반송)주소      | 건축물 소재지     | 위반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최*향 | 영도구 한결길 *** | 신선동1가 ***-1 | 증축(옥상), 패널, 주택(창고)<br>9㎡/260.34㎡, 2024 |    |

○ 2차 시정명령

| 납부자 | (반송)주소                   | 건축물 소재지     | 위반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이*욱 | 부산 서구 송도해변로 **, *동 ****호 | 남항동2가 **-*2 | 신축(2층), 컨테이너, 공장(휴게실)<br>15㎡/15㎡, 2024 |    |

- 기타사항 :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,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(심판청구의 기간)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(온라인 청구 시 [www.simpan.go.kr](http://www.simpan.go.kr) 을 이용)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(제소기간)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건축과(☎051-419-458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2026. 8. 7.

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

